

기 안 지

기 안 자		경우파기획재	전화 번호	459	공 표	필 요	불필요
		경찰 정상보					
고 시		제장	마장	부시장	시장		
		5.10	5.10	5.10	5.10		
협성		법제제작	총무과장	교통과장	도로	시장	
		문서	지도대장	교통대장	도로	시장	
기념		65. 6. 10	65. 6. 4	6. 2			
		문서	문서	문서			
기념		유	내부결재	발신			
		문서	안찰조				
제 목		도로 교통법에 의한 제한지시에 관한 고시증					
		개정					
(제 1 안)							
도로 교통법 제 44 조 제 7호 에 의거 교통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전자 준수사항을 별첨과 같이 추가 제정 고려 합니다.							
위첨 고시 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동전

서울특별시 고시 제 878 호 (65. 3. 4.)

710

512

도로 교통법에 의한 제한지시에 관한 고시 중 별첨
과 같이 개정 하였기 "보고" "통보" "하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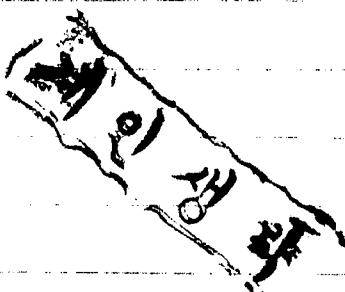
유첨 서울특별시 고시 제 887 호
수신처 가/2 42-411. 21-222. 서국 1.

(제 3안)

서정무 139-2045.

수신 공보실장

제목 동전



서울특별시 고시 제 878 호 (65. 3. 4) 도로
교통법에 의한 제한지시에 관한 고시 중 별첨과

같이 개정 하였기 시보에 계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유첨 서울특별시 고시 제 887 호

서울特別市告示 第887號
道路交通法에 依한 制限指示에
關한 告示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西紀 1965年 6月 4日
서울特別市長 尹致暎
道路交通法에 依한 制限指示에 關한
告示中 改正

三. 運轉土의 運守事項 "아"項 다음에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자. 夜間에 燈火運行하는 車輛
은 行이 頻繁한 道路에서는 前照燈의
照射方向을 繼續下向 하여야 한다.